##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



[시행 2019. 5. 10.] [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-6호, 2019. 5. 10., 일부개정]

원자력안전위원회(방사선안전과), 02-397-7337

[별표 2] 진료환자 격리 및 퇴원 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

[별표 2]

## 진료환자 격리 및 퇴원 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

	방사능		1m 거리 선량률
	제1란		제2란
주요 핵종	GBq	mСi	mSv/h
Au-198	3.5	93	0.21
Ga-67	8.7	240	0.18
I-123	6	160	0.26
I-125	0.25	7	0.01
I-125 (이식)	0.33	9	0.01
I-131	1.2	33	0.07
In-111	2.4	64	0.2
Ir-192 (이식)	0.074	2	0.008
P-32	*	*	*
Re-186	28	770	0.15
Sr-89	*	*	*
Tc-99m	28	760	0.58
T1-201	16	430	0.19
Y-90	*	*	*
Yb-169	0.37	10	0.02
Ra-223	*	*	*

- 1. 방사성통위원소를 투입 또는 투여 반은 환자의 퇴원으로 인한 다른 개인의 피폭방사선량이 5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 및 환자로부터 1 m 거리에서의 선량률을 각각 제시하였다.
- 2. 1 m 거리에서의 선량률은 환자 신체 표면에서부터 1 m 거리에서 바닥으로부터 1 m 높이의 공간 선량률(주위선량당량률 또는 유효선량당량률)을 측정한다.
- \* 알파 방출체(Ra-223) 또는 베타 방출체(P-32, Sr-89, Y-90)는 다른 개인에게 미치는

영향이 매우 미미하므로 기준값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.